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관련 664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2021년 12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 나.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제7항·제8항)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21. 12. 30.)

## 주무부처 검토의견 및 재의요구 사유

금융위원회 검토의견(공정시장과-2606)

-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

- 사무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 관련 서류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하는 것으로 회계감사에 포함

○ 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여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을 위반

- 공인회계사법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한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

○ 위와 같은 사유로 '21. 12. 22.자로 의결 및 이송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우리시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같은 항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함.

##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제15조제8항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lt; 신 설 &gt;</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동일)</p> <p>6. “<u>사업비 결산서 검사</u>”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략)</p> <p>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⑨ (생략)</p>	<p>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동일)</p> <p>⑦ -----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u>사업비 결산 검사인</u>”이라 한다)로부터 <u>사업비 결산서 검사</u>-----, <u>사업비 결산서 검사</u>----- ----- -----.</p> <p>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p> <p>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p> <p>⑧ ----- 독립된 <u>사업비 결산 검사인</u>----- -----.</p> <p>⑨ (현행과 동일)</p>